

대전지방법원 2023. 6. 1 선고 2020가단1378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현, 이정희

피 고 1. C

2. D 주식회사

3. E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권현정, 손유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진주, 김가비, 유관우

피고 3의 보조참가인 F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완 담당변호사 권현정, 손유정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전진주, 김가비, 유관우

변 론 종 결 2023. 2. 9.

판 결 선 고 2023. 6. 1.

주 문

1. 피고 C와 D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2. 11.부터 2023.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및 피고 C,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E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C와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와 피고 E 주식회사(이하 피고 E라 한다) 사이에 2016. 10. 20.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E는 피고 C에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6. 10. 20. 제570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사실

- 1)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5. 12. 7. 피고 D과 CNC 자동선반기계(MS26A-S53-5434-001, 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125,000,000원으로 정하여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 25. 이를 납품받았다.
- 2) 망인은 2016. 1. 25. G 주식회사와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 D은 G

주식회사로부터 위 대금을 수령하였고, 망인은 2016. 1. 25.부터 2021. 2. 10.까지 매월 할부금액 2,293,000원을 G 주식회사에 납부하여 합계금 125,000,000원을 완납하였다.

3) 이 사건 기계는 망인이 납품받은 날부터 가동되지 않았고, 이 사건 기계의 구조적 불량으로 인해 전혀 사용할 수 없어 망인은 피고 D에 수습 차례 연락하였다.

4) 피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2016. 2. 26. 이 사건 기계에 구조적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망인에게 다음과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2016. 1. 25. D(주)에서 납품한 CNC MS26A에 구조적 결함이 있어 양산 체제로 갈 수 없어 D(주)에서

구조 변경하여 양산체제로 변경하기로 약속하며 아래와 같이 약속한다.

1. D에서 구조변경 후(시스템, 메인축, 배면, 서브축스핀들, 서브스핀들지지대 보강, 볼스크류 변경 등)

정상적으로 양산체제로 됐을 경우 합의가 정상적으로 된 것으로 본다. 만약 문제가 있을시 D(주) 및 대

표이사가 다시 재매입할 경우 H(원고를 뜻한다)에서 이미 납입한 할부금도 변상한다.

2. 2016년 2월 26일 이후부터 구조변경이 정상적으로 변경이 완료됐을 때까지 할부금 대납은 D에서 책

임진다. 만약 문제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법적비용 모든 것을 D(주) 및 대표이사가 책임진다.

5) 피고 D은 이 사건 기계를 2016. 5.말까지 구조 변경하는 것으로 수리하였으나 정상적인 가동이 되지 않았고, 이후 2017. 8.경까지 계속 수리를 시도했으나 근본적인 결함을 고치지 못하였다. 이후 피고 회사의 직원들은 더 이상 수리하는 것을 포기하였다.

6) 이후 망인과 원고(망인의 소송수계인)가 피고 C에게 여러 차례 연락해 봤지만 연락이 두절되었고, 피고 D은 그 무렵 폐업하였다.

7) 감정인 I은 이 사건 기계는 “여러 가지 에러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한 상태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품질요건에 충족하고 있지 못하고, 그 수리 작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수리비용 또한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사항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정하였다.

8)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2. 9. 17.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들 중 B(남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인 J(장녀), K(차녀), L(부), M(모)은 2022. 11. 28. 대전가정법원 2022느단1062호 상속포기 심판을 받았고, 이 사건 소송절차를 B이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음,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 및 원고는 이 사건 기계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나아가 이 사건 합의 중 손해배상책임조항인 제2항에 따라, 피고 C와 피고 D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매매대금 상당인 125,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책임의 제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377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이 사건 계약 체결일로부터 장시간이 흘렀고, 공급 받은 초기에는 계속된 수리를 통해 극히 짧은 기간이라도 원고 측에서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위 피고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와 피고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00,000,000원(125,000,000원 × 0.8)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피고들에 대한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0. 12.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6.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피고 C는 2016. 10. 20. 피고 E(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N이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E의 보조참가인(이하 피고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E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 12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신탁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신탁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사해행위 성립 여부)

1) 관련 규정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신탁을 설정한 경우 채권자는 수탁자가 선의일지라도 수탁자나 수익자에게 민법 제406조 제1항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탁법 제8조 제1항).

2) 수익자의 선의

위 기초사실 및 을나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과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우선수익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수익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필 필요도 없이 원고는 피고 E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및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와 이 사건 신탁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대출거래 외에 아무런 거래관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신탁계약이 체결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 C에 대한 대출을 실행하기에 앞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평가절차와 등기부 열람 등을 거쳤고,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신탁등기 이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압류, 가압류 등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정해진 수익권 발행금액과 대출금, 이 사건 건물의 시가 등을 고려하면 그 대출과정이나 내용, 담보비율 등에 있어 특별히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신탁계약의 취소로 인한 담보상실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출을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도 어렵다.

마) 특히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 C에 대한 피보전채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기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금융기관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아무런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C와 D에 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성대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아파트 P호

